

영등포구의회
제16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1. 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李 憲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54호로 2011년 4월 27일 고기관 의원외 4인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1년 4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새마을운동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의 날을 지정하고 매년 기념하도록 하여 새마을정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로
조례 제명 변경(조례명)

나. 목적 규정 개정 및 정의 규정 신설(안 제1조, 안 제2조)

다. 매년 4월 22일 새마을의 날 지정 및 적합한 행사 등 사업
실시(안 제3조)

라. 새마을지도자 보험 가입 조항 신설(안 제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계속적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의 날을 지정 매년 기념하도록 하여 새마을정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함.
- 주요 개정사항으로 현행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로 변경 하는 것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같은 제명으로 변경하여 법 제명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한 것임.
- 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 개정은 간결하면서 적절하고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함.
- 안 제2조에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용어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법규정에 준하여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함.
- 안 제3조제1호는 2011. 3. 8일 일부개정된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 토록 규정하였음.

- 안 제7조에 보험 가입 조항 신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임.

- 이 개정조례안은 반 세기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개발도상국들의 롤 모델인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된 운동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다소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새로이 정립 한다는 관점에서 시기적절한 개정이며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개정으로 법체계 및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8조의2(새마을의 날) 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새마을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1.3.8]

2 새마을운동 개요

□ 운동 및 조직 연혁

- '70. 4.22 '새마을가꾸기운동' 제창(부산, 전국지방장관회의)
- '73. 1.25 새마을훈장(자립, 자조, 협동, 근면, 노력장) 제정
- '80.12. 1 (사)새마을운동중앙본부 창립
- '80.12.13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정
- '89. 3.21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개칭
- '00. 4.19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를 새마을운동중앙회로 개칭

□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 현황

(단위 : 명)

| 합 계 | 새마을지도자 영등포구협의회 | 영등포구 새마을부녀회 | 새마을문고중앙회 영등포구지부 |
|-------|-------------------|----------------|--------------------|
| 1,272 | 441 | 386 | 445 |

□ 4대 중점 운동

| 구 분 | 과 제 |
|----------------------------|--|
| Green Korea 녹색 새마을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생활 실천 ○ 지구 온난화 방지 등 |
| Smart Korea 나라품격 높이기 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에티켓, ○ 배려·칭찬·친절 실천 ○ G20 성공실천 운동 등 |
| Happy Korea 살맛나는 공동체 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가정 '한가족 손잡기 ○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운영 ○ 기부문화 정착 등 |
| Global Korea 세계화 새마을운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새마을교육 ○ 저개발국 새마을 협력사업 ○ 해외청년 봉사단활동 등 |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 번호 | 기 념 일 | 월 일 | 번호 | 기 념 일 | 월 일 |
|----|-------------------|-------------|----|-----------------|---------------|
| 1 | 납세자의 날 | 3. 3 | 22 | 호국의병의 날 | 6. 1 |
| 2 | 3·15의거 기념일 | 3.15 | 23 | 환경의 날 | 6. 5 |
| 3 | 상공의 날 | 3월셋째 수요일 | 24 | 현 충 일 | 6. 6 |
| 4 | 향토예비군의 날 | 4월첫째 금요일 | 25 | 6.10 민주항쟁기념일 | 6. 10 |
| 5 | 식 목 일 | 4. 5 | 26 | 6.25 사변일 | 6. 25 |
| 6 | 보건의 날 | 4. 7 | 27 | 철도의 날 | 9. 18 |
| 7 | 대한민국임시 정부수립기념일 | 4.13 | 28 | 국 군 의 날 | 10. 1 |
| 8 | 4.19혁명기념일 | 4.19 | 29 | 노인의 날 | 10. 2 |
| 9 | 장애인의 날 | 4.20 | 30 | 세계한인의 날 | 10. 5 |
| 10 | 과학의 날 | 4.21 | 31 | 재향군인의 날 | 10. 8 |
| 11 | 정보통신의 날 | 4.22 | 32 | 체육의 날 | 10.15 |
| 12 | 법의 날 | 4.25 | 33 | 문화의 날 | 10월셋째 토요일 |
| 13 | 충무공탄신일 | 4.28 | 34 | 경찰의 날 | 10. 21 |
| 14 | 근로자의 날 | 5. 1 | 35 | 국제연합일 | 10. 24 |
| 15 | 어린이 날 | 5. 5 | 36 | 교정의 날 | 10. 28 |
| 16 | 아버이 날 | 5. 8 | 37 | 저축의 날 | 10월마지막 화요일 |
| 17 | 스승의 날 | 5.15 | 38 |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 11. 3 |
| 18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 5.18 | 39 | 농업인의 날 | 11. 11 |
| 19 | 부부의 날 | 5.21 | 40 | 순국선열의 날 | 11. 17 |
| 20 | 성년의 날 | 5월셋째 월요일 | 41 | 무 역 의 날 | 11. 30 |
| 21 | 바다의 날 | 5.31 | 42 | 소비자의 날 | 12. 3 |

4 국경일과 국가기념일 비교

□ 국경일(國慶日)

국경일(國慶日)은 개국이나 국권회복 등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데 직접관련이 있는 날을 국가적으로 경축하는 날로서 우리나라는 1949년 10월 1일 제정·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4대 국경일로 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음.

□ 국가기념일(國家紀念日)

국가기념일(國家紀念日, 法定紀念日)은 납세자의 날, 식목일, 정부수립 기념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당해 특정일의 의의를 높이고 새로운 발전과 성숙을 모색하고자 정부가 제정·주관하는 기념일로서, 1973년 3월 30일 공포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제정·공포당시 26가지였던 기념일은 현재 42가지에 이르고 있음